

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P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2. P.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군민의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을 위한 학교운동장, 도서관,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의 연중개방으로 수도요금의 학교재정에 차지하는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재정의 건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내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30퍼센트 감면조항 신설 (안 제37조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(안 제6조의3, 안 제16조의3)

3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
 - 고성군 공고 제 2008-744호(2008. 12. 2 ~ 2008. 12. 22)
 - 의견 및 제출사항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협의 함
- 다. 관계법령 및 근거 : 수도법 제38조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4. 본 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제1항 중 “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”을 “「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3제1항 중 “「수도법 시행령」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수도법 시행령」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(요금등의 감면)

- ② 군수는 관내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※ 참고자료

○ 수도요금 감면조례 시·군별 시행 현황

연번	시·군	감면요율	바 고
1	창원시	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<u>단계별 요율 1단계만 적용함</u>	
2	진해시	관내 초·중·고등학교는 <u>단계별 요율 1단계만 적용함</u>	
3	양산시	관내 초·중·고등학교는 <u>50% 감면</u>	
4	하동군	관내 초·중·고등학교는 <u>30% 감면</u>	
5	거창군	관내 초·중·고등학교는 <u>50% 감면</u>	
6	합천군	관내 초·중·고등학교는 <u>단계별 요율 1단계만 적용함</u>	